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정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21.

발 의 자 : 정정순 · 이병훈 · 신정훈
이규민 · 홍기원 · 김정호
임호선 · 강병원 · 김승남
김경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,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,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제2호 및 제6호).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향상시키는”을 “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확보하기”를 “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효과성”을 “효과성,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·효과성 및 책임성을 <u>향상시키는 것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</u>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정부업무평가”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·효과성 및 책임성을 <u>확보하기</u>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평가대상기관”이라 한다)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생략) 6. “성과관리”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, 중·장기 목표,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,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·능률성·<u>효과성</u>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 7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효과성, 국가균형</u> <u>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</u>--- ----- -----. 7. (현행과 같음)
--	--